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5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허성무의원안)	2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허성무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 제1항제1호)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u><신 설></u>	☐ 영세율 적용 대상에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부터 적용

* 허성무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55)

☐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¹⁾

1)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도 국방연구개발의 일환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와 비교할 때 포괄범위가 같음.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방위산업 군(群)으로 포괄하여 명시한 것이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연구개발을 연구개발단계와 개발목적 및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2)」, 임상엽·정정운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²⁾에서 규정),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3)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방위사업법」⁴⁾에 따른 방산물자란 무기체계⁵⁾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에 한해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를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4)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제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제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안은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방산물자 외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⁶⁾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그에 따라 생산하는 물자의 최근 5년간 공급가액은 연평균 5조 7,260억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 공급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민간기업	20,950	51,885	66,353	67,137	51,390	51,543
대학	-	274	1,872	1,513	603	852
연구기관	54	321	3,001	6,288	14,660	4,865
합계	21,004	52,480	71,226	74,938	66,653	57,260

주: 국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및 물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무기체계,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전력지원체계 등 국방연구개발용역의 수행 주체에는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2024년 기준 민간기업이 5조 1,390억원, 대학이 603억원, 연구기관이 1조 4,660억원을

6)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수행하여 총 6조 6,6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방산업체의 경우 국방연구개발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
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계
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
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⁷⁾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국방 연구개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
를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며 방위산
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또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 방산업체들은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
출 증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결국, 첨단 국방기술 개발과 무기체계의 발전은 국가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반원
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

7)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한국경제인협회, 2024 .5.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 방산계약은 특정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요구되
어 대부분 일반개산계약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한 명확한 원가와 품목별 계약금액 산정
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반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자료 획득이 어렵고 다른 계약방법 적용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계약으로, 계약 이행 후 정산해 계약금액을 확정함.

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개정안과 같이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타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산업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건설업 등 여러 산업에서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특히 방산업체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부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셋째, 국방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최종 소비자는 대부분 국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으로 귀속됨.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

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사전에 계약금액이 미확정되는 경우는 국방연구개발에 한정되지 않은데다가 특정 기업의 투자 여력 제고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62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3,109억원(연평균 2,6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1,958	-1,958	-1,958	-1,958	-1,958	-9,792	-1,958
지방소비세 (25.3%)	-663	-663	-663	-663	-663	-3,316	-663
합계	-2,622	-2,622	-2,622	-2,622	-2,622	-13,109	-2,6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